

2009. 11. 26(목)

제163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배성한

【 목 차 】

1.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4
3.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4.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5.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 조례안 26
6.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7.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11. 1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11. 16.

2. 제안이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거주기간(1년 이상)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그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의 공훈에 걸 맞는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참전유공자의 전입 시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함 (안 제3조).
 - 현행 : 지급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
 - 개정 :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자

4. 법적근거

가.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7,200천원)

다. 입법예고(2009. 10. 30 ~ 11. 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거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거주기간을 제한하고 있었던 규정을 삭제하여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자로 그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의안번호 제2009 - 43호>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11. 1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11. 13.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규정이 독자적으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새로 제정·시행 및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통합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총칙[제1장]
 - 조례의 목적과 관리책임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공유재산 통칙[제2장]
 -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안 제 5조)

-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은 실제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함(안 제14조)

다. 행정재산[제3장]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제18조)

라. 일반재산[제4장]

-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에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 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함(안 제26조)
-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 시
100분의 70으로 감액 조정함(안 제 29조)
-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군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함(안 제34조)

마. 공유임야 관리[제5장]

-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함(안 제38조)

바. 청사관리[제6장]

-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정 순으로 함(안 제39조)

사. 관사관리[제7장]

- 관사는 군수·부군수 등 군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군이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공용임차주택 및 시설관리사 등을 말함(안 제44조)

아. 물품관리[제8장]

-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위임함(안 제54조)
-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60조)
-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0조)

자. 보칙[제9장]

- 변상금의 부과절차, 분할납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 제81조)
-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률과 보상금의 한도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84조)

차. 부칙

-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통합한 조례 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개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부칙으로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010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09. 9. 24 ~ 10. 13)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 8. 4일 제정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거창군 물품관리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통합하여 재산과 물품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은 9장 86조 부칙 5조로 배열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이 조례의 총칙적인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2조까지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3조부터 안 제79조까지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0조부터 안 제86조까지는 보칙 사항을 규정하였음.
- 상기와 같이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이 법에서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종물)
2. 선박, 부잔교(부잔교), 부선거(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3.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48조(물품의 범위) 이 법에서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2. 유가증권

3.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전문개정 2008.12.26]

제49조(물품의 분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을 사용 및 처분할 때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정한 물품 관계 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 분류의 기준과 그 밖에 물품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전문개정 2009.4.24]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

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의안번호 제2009 - 44호>

〔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11. 1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11. 16.

2. 제안이유

거창군세 감면시한(2009.12.31)이 도래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그 유효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하고, 자치단체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하거나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목적조항을 간명화 함(안 제1조).
 -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8조의4에 ‘자활용사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함(안 제2조제1항).

- 다.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조, 제10조, 제17조)
-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
- 라. 현행 지방세법상(제272조제5항)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는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므로 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또한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감면토록 그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6조).
- 마.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09.9.30 현재 국회 상정)인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의2 삭제)
- 바. 감면 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거나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감면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안 제13조·안 제15조의3·안 제15조의4·안 제21조·안 제22조 및 안 제28조)
- 한국노동연구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주민공동체가 공동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주차장용 부동산(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 물류산업(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 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상 감면이 적용 되는 규정과 중복으로 삭제함(안 제11조).

아.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정비함(안 제14조).

○ 지방세법 개정('09.2.6)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1천분의 1.5 적용 시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효과 상쇄
자.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된 전방조종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 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감면시한('09년말)이 도래하여 감면을 폐지함(안 제15조의2).

차.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을 각 조문에서 삭제하여 제7장 보칙으로 이관·신설함(안 제16조제2항 단서·안 제18조·안 제19조 삭제 및 안 제29조의4 신설).

카. 감면신청과 감면통지에 따른 관련 서식은 조례의 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과 일치하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조례에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삭제함(안 제30조,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삭제).

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거나 관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표현 등을 논리에 맞게 정비함.

4. 법적근거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제112조, 제188조, 제196조의5, 제266조, 제273조, 제294조, 제295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 제1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09. 10. 27 ~ 11. 1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2009년 10월 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이첩 시달됨에 따라 관련 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2009 - 53호>

〔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검토보고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11. 1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11. 16.

2. 제안이유

- 1970년 진주측후소 거창분실로 창설되어 2008. 10. 22일자 거창기상대로 승격됨에 따라 근무인원 및 각종 관측 장비의 증가로 인한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기상대 관측시설 및 청사 신축 부지를 확보하여 교환하고자 함
-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가 2009년 1월 1일 1001빌딩 2층을 임차하여 개청 식을 가졌으나, 사회 봉사제도 등 신규제도 도입·시행으로 보호관찰소 업무가 늘어나고, 근무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청사 신축에 따른 신축 부지를 확보하여 교환하고자 함

- 웰빙 스포츠 메카인 거창스포츠파크에서 많은 군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으나, 인근에 소재한 양돈축사의 악취로 인해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쾌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양돈축사를 매입하여 레포츠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자 함
- 늘어나는 여가활동 시간과 스포츠를 즐기는 연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체육시설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스포츠파크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다목적 인조 잔디 운동장을 조성하고자 함
-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단위사업으로 산·학·연·관 협력 체제가 되도록 승강기 전문단지과 연계한 거창승강기센터를 건립하여 신기술개발 촉진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극대화 하고자 거창승강기센터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 정장리 일반공업지역 공장용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장 입주 예정 기업에게 매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취득·처분재산의 표시

① 취득재산

(단위 : m²/천원)

사업명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및지목	수량	공시지가 시기표준액	비고
계		5건		56,455.41	690,168	
거창기상대 부지	토지	거창읍 정장리 967-7번지의외 5필지	토지	10,000	156,251	사업비 : 600백만원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 부지	토지	거창읍 김천리 169-8번지의외 4필지	토지	3,420	119,495	사업비 : 300백만원
거창스포츠파크 주변 부지	건물/ 토지	거창읍 양평리 1161번지의외 9필지	계	11,500.41	147,182	사업비 : 2,500백만원
			건물	1,011.41	12,033	
			토지	10,489	135,149	
양평다목적 운동장 조성 부지	토지	거창읍 양평리 1125번지의외 7필지	토지	15,005	226,344	사업비 : 1,300백만원
거창승강기센터 신축 부지	토지	남상면 월평리 1544번지의외 7필지	토지	16,530	40,896	사업비 : 500백만원

②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m²/천원)

사업명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및지목	수량	공시지가	비고
계		1건		40,369	701,790	
정장리 일반공업 지역 공장용지	토지	거창읍 정장리 83번지의외 5필지	토지	40,369	701,790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4조

5. 검토의견

○ 거창기상대 부지 매입안은 2008년 10월 22일자로 진주측 후소 거창분실에서 거창기상대로 승격됨에 따라 근무인원 및 각종 관측 장비 등의 증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기상대 관측시설 및 청사 신축 부지를 우리 군이 확보하여 교환하려는 것으로

- 2009년 당초 예산에서 기상대 부지 매입비로 3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기 확보한 예산으로는 기상관측환경 「기상관측표준화법에 의한 기상관측환경 기준 10,000㎡」에 적합한 부지 확보가 어려워 2009년 확보한 3억원은 결산추경에서 삭감조치하고,

2010년 당초예산에 6억원을 재편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임.

○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 부지 매입안은 거창읍 상림리 796번지 1001빌딩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업무가 늘어나고 근무인원이 증원되는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소가 협소하여 우리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임.

⇒ 거창기상대 부지와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 부지는 국가에서 매입하여야 할 것인데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제공할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거창스포츠파크 주변부지 매입안은 거창스포츠파크에 인접하고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인 거창읍 양평리 1161번지의 9필지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 2009년 11월 12일 거창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음.
- 양평다목적 운동장 조성부지 매입안은 거창군 양평리 1125번지 외 7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다목적 인조잔디운동장 1면, 부대시설 조성을 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 2009년 10월 13일 거창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음.
- 거창승강기센터 신축부지 매입안은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일원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종합연구 개발동 등 총사업비 144억원(국비 92억원, 도비 26억원, 군비 26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당초 계획에는 부지매입비 등 군비 부담 계획이 없었는데 군비부담을 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정장리 일반공업지역 공장용지 처분안은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1-5번지 외 35필지에 2008년 9월 8일 정장일반공업지역내 공장용지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문화재 시굴

사업, 편입물건 보상계획, 기반시설사업 등 공장용지 조성 사업을 2009년 11월 16일을 완료하였음.

- 완료된 공장용지를 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의안번호 제2009 - 45호>

〔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11. 1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11. 16.

2. 제안이유

사이버군민제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사랑 사이버 군민화를 통한 군 발전 인적자원 발굴을 도모하고, 도·농 간 정보교류와 참여를 활성화하여 군에 대한 관심유도 및 홍보를 통한 군세확장과 더불어 대 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사이버거창군민의 자격 및 등록, 지원사업, 혜택 등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거창군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거주자들 누구나 군과 홈페이지에 관심이 있는 자는 사이버거창군민이 될 수 있음

- 사이버거창군민은 사이버거창홈페이지에서 소정의 가입 절차에 따라 등록하거나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음
 - 군수는 사이버거창홈페이지를 군청 홈페이지와 연계되도록 구축·운영하고 사이버거창군민약관을 정하여 게시하도록 하며, 사이버거창 홈페이지의 개선, 민간교류 활성화, 각종 정보의 제공, 이벤트 등 개최, 사이버거창 가맹점 확보 및 관리 등 사이버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사이버거창군민에게는 사이버거창군민증 수여, 수송대관람료의 면제, 사이버거창가맹점 발행 할인쿠폰 제공, 농·축·특산물 직거래 알선, 각종 정보의 제공,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사이버거창홈페이지 이용실적에 따른 포인트 부여와 사이버농원 농산물 체험권 교환 등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주선할 수 있음
- 다.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설치하는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및 운영방법, 수당,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라. 그 밖에 다른 조례의 준용, 시행규칙등 조례의 절차적·보충적인 사항을 보칙으로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4. 법적근거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 제19조

나. 예산조치 : 27,600천원(2010년 본예산에 반영)

다. 입법예고(2009. 11. 03 ~ 11. 1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군민과 우리 군민의 상호간 정보교류 및 사회 경제적 교류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사이버 군민에게는 우리 군의 농·축·특산물 직거래 알선 등 경제적, 사회적 이로우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2. 시·군 및 자치구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09. 11. 12.
- 나. 발 의 자 : 신주범 의원 외 1인
- 다. 회부일자 : 2009. 11. 16.

2. 제안이유

관내 유치원에 대하여 교육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숙사를 운영하는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도시·농촌간의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
- 보조사업의 범위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2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제명 변경과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한 신설 및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함(안 제2조제2호의2·제3호·제4호·제8호,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육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나. 예산조치 : 해당부서 의견 수렴

다. 그 밖에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유치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또한 고등학교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1. "농산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의 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림어업인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임업 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한다.

3. "농산어촌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반일제"라 함은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시간연장제"라 함은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6. "종일제"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 (유아교육·보육위원회) ①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둔다.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2. 유치원 및 보육시설간의 연계운영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3.24, 2008.2.29>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실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자 각 2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2.30> ②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0, 2006.12.30, 2007.7.20>

1.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 ③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 ④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시·도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⑦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09. 11. 12.
- 나. 발 의 자 : 신주범 의원 외 1인
- 다. 회부일자 : 2009. 11. 16.

2. 개정이유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유치원에 대하여는 지원의 근거가 없으므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초·중·고등학교에만 지원하던 급식비를 유치원에도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 및 제3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학교급식법시행령」, 「유아교육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부서 의견 수렴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에만 지원하던 급식비를 확대하여 유치원에도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학교급식법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8조 (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1. "농산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의 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림어업인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임업 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한다.

3. "농산어촌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반일제"라 함은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시간연장제"라 함은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6. "종일제"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7조 (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